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수행하는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거나 그 지정·고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 중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거나 75세 이상인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를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종합병원”을 “종합병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의2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사람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누산한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3. 75세 이상인 사람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의료기관이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실·부정한 방법으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성검사 기관의 지정·고시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①·② (생략)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 ----- ----- ----- ----- -- 종합병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료기관 ----- -----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1.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사람
<신설>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누산한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신설>	3. 75세 이상인 사람
<신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의료기관이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실·부정한 방법으로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고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